

수원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수원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약자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시민의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의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약자 등”이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 하는 사람
 -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 라.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 하는 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거약자(등)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주거약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공공??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주거복지사업

제4조(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약자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반영하여야 한다.

주거약자들의 거주환경개선 자가가구 이외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도배,장판을 자원봉사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니-자원연계 방안

중앙정부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 계획은 4년으로 하면 어떠한가 지자체 단체장 선거와 맞추는 것이 좋겠다

실태조사 - LH에서 진행하는 조사와 수원시에서 하는 조사가 다를것이라 생각됨. LH에서만 한다면 조례에서 삭제를 해야하는 것이고 수원시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넣으면 좋겠다. 하지만 수원시의 맞춤 조사가 필요할 것임.

주거복지위원회 - 협의체 자활고용주거분과에서 분과장이 참여하는 구조로

주거복지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맞춰서 하면 좋을 것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기와 맞춰한다. 조례에 대한 건의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주요사업 계획 및 세부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약자의(삭제)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수원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수준 및 욕구의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가구특성
2.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3. 주택의 시설 및 설비
4.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5. 주택가격 및 임대료
6.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7.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주거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주택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⑤ 주거실태조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조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약자(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5.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
6. 주거약자(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수원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주거복지 지원센터)의 설치·관리 및 위탁·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약자 지원 및(삭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주거복지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수원시에는 주거복지관련 시민단체가 부재함으로) (복지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혹은 친족관계인 자가 해당사안의 당사자 혹은 신청자인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삭제 -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임대주택 신청 지원등)이 상시적으로 관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② 위원회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특정 심의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제14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주거복지지원센터)(이

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약자(등)의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정보제공 및 상담
2.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약자(삭제)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거약자(등) 및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6. 주거약자 주거지원 등(삭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8.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계획 및 조사업무

(8.주거약자등의 주거실태조사 및 주민의 주거욕구 파악)

9.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약자(등)의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6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수탁자의 요건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삭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법인으로 한정되지 않고) 위탁받을 수 있도록)
-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와 사업비)-서울시에서는 명시되어 있음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계획서 제출시기가 매년 9월말까지로 위원회 심의후 시장제출에 촉박성문제가 있음. 제출시기 조정필요)

- (①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경비의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 잔액과 시설·장비·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시할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된 업무의 수행 중 관계 법령의 위반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시의 거부
3. 그 밖의 위탁계약에 대한 위반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의견을 위원회의 심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주거복지지원사업을 분석·평가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단체, 지역주민에 대한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성남시)

제20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